

등록번호	사회적경제지원과-7206
등록일자	2017. 08. 18.
결재일자	2017. 08. 18.
공개여부	대국민 공개

주무관	사회적경제기획팀장	사회적경제지원단장	부시장			결 재
서문지연	송정근	김기평	전결 2017. 8. 18. 박순종			
협 조 자	주무관 남상환					협조란의 결재 서열은 정해진 셀값으로 인해 순서가 바뀔수 있습니다.

‘지역순환경제 활성화 및 전주 브랜드향상을 위한’
2017 전주가맥축제 자원봉사자 상장 발급 검토보고
계획



사회적경제지원단
사회적경제지원과

‘지역순환경제 활성화 및 전주 브랜드향상을 위한’

2017 전주가맥축제 자원봉사자 상장 발급 검토보고

○ 전주의 브랜드 행사인 가맥축제를 성황리에 이끌어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와 주민·공동체 화합에 기여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상장을 수여하여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 제공

□ 상장개요

- 상 장 명 : 우수상
- 수여인원 : 3명
- 훈 격 : 전주시장
- 지원근거 : 전주시포상조례 제7조2호 및 공직선거법 제112조2항2호자목
- 의뢰기관 : 가맥축제조직위원회

□ 시상식 개요

- 일 시 : 2017. 08. 18.(금) 14:00
- 장 소 : 가맥지기 해단식 현장(하이트진로 전주공장 견학동)
- 주 관 : 가맥축제조직위원회
- 상장수여현황 : 13명(도지사 2, 전주시3, 경제통상진흥원 4, 가맥조직위 4)

□ 검토결과

- 전주시포상조례 제7조2호 및 공직선거법 제112조2항2호자목에 따라 상장수여 가능
- 전주만의 문화인 가맥축제를 통한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주 시장상 발급 승인 필요

☞ 전주시포상조례 제7조(상장)

제7조(상장)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.

- 2. 학술·예술·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

☞ 공직선거법 제112조(기부행위의 정의 등)

제112조(기부행위의 정의 등)

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.

- 2. 의례적 행위

자. 읍·면·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·예술·체육행사,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(부상은 제외한다. 이하 이 목에서 같다)을 수여하는 행위

☐ 승인사항

- 전주시장 상장(우수상) 발부 3부

☐ 승인조건

- 상장제작 지원하되 상품(부상)은 지원하지 않음
- 단체의 영리행위를 위한 시 명칭 사용 및 허위 과대광고 불가
- 행사장 질서, 안전 및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
- 행사종료 후 7일 이내 행사결과보고서(붙임 서식) 제출

행사결과 보고서

문서번호 -

시행일자 : 2017. . .

1. 행사결과

행 사 명				
행사일시	2017년	월	일	시
참여인원	명 ()			
행사내용 및 기타사항				

2. 전주시장상 수상자 명단

상장번호	입상구분	팀명	팀원명(학교/성명/성별)	비고
			-	
			-	
			-	
			-	
			-	
			-	

3. 행사 관련 사진 별지 첨부

- ※ 1. 상장번호는 우리시에서 부여(발급)할 번호임
 2. 행사결과보고서(사진 포함)는 행사종료후 7일 이내에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과로 우편발송하거나 팩스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FAX 240-0491)
 3. 별도 공문 없이 본 양식에 단체장 직인 날인후 송부바랍니다.

단 체 명 :

(직인)

전 주 시 장 귀하

제 호

상 장

우수상

소 속 :

성 명 :

귀하는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와 전주의
브랜드 향상을 위해 개최 된 「2017 전주가맥
축제」 에서 우수한 가맥지기로 활동하였기에
상장을 드립니다.

2017년 8월 18일

전 주 시 장 김 승 수